

## 화물, 제대로 안 묶으면 단속 걸린다

- 4월 17일부터 적재불량 등 불법운행 합동단속

… 적발 시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등 엄중 조치

- 정부가 4월 17일부터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\* 합동 단속에 나선다.
  - \* 경찰청, 한국교통안전공단, 한국도로공사, 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적재불량, 과적 등
  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차(4.17~6월)로 수도권, 강원권, 충청권, 2차(9월~11월)로 전라권,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.
  -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.
  - \* 사고다발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TG, 휴게소, 졸음쉼터, 국도 과적검문소에서 단속시행
- 이번 단속에서는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, 「도로법」, 「도로교통법」, 「자동차관리법」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며, 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 - 첫째,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, 적재물 이탈방지,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.
  - 둘째, 「도로법」 및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.
  - 셋째,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.

□ 특히, 이번 단속은 적재불량 화물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.

-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1의3에 규정된 적재화물 이탈 방지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였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.

< 적재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 및 위법판단(붙임 참조) >

적재물 이탈방지 주요 기준 및 방법	위반여부 판단
① 급정지·급출발·회전 등 차량의 주행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덮개나 포장을 할 것	덮개·포장 대상임에도 덮개·포장을 하지 않은 차량
② 급정지, 급출발, 회전 등 차량의 주행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, 체인사슬, 벨트, 로프 등으로 충분히 고정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	고임목·체인사슬·벨트 등을 사용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 * 고정상태가 단단한지 느슨한지 손 등으로 당겨서 확인
③ 원형단면 화물 및 개방형 적재함의 전후좌우에 공간이 발생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적재된 화물의 지름 10분의 1 이상의 고임목이나 받침목 사용.	고임목·받침목이 없거나 지름 10분의1 미만을 사용한 경우
④ 적재화물이 주행 중 어느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거나 무게가 집중되지 않도록 적재하되, 무게 중심이 적재부 중심에 가깝게 적재	적재부 무게 중심에 적재하지 않은 경우

< 주요 위반 적발 사례 >



적재화물 미고정



적재화물 미고정(현지 시정중)



컨테이너 잠금장치 미잠금



적재도구 등 미고정

- 한편, 국토교통부는 이번 단속에 앞서 화물운송사업자 등이 화물 적재 기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연합회, 화물복지재단 홈페이지 등에 합동단속 계획을 공지하였다.
- 적재불량 기준과 점검방법 등을 전파하는 한편,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통해 화물운송종사자에 대한 화물 적재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“적재불량, 과적 등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므로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”이라면서
- “운송업계 및 운수종사자들도 법령에 규정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 서주시기를 바란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	책임자	과 장	이경수	(044-201-4016)
		담당자	사무관	박재웅	(044-201-4021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
**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**



□ **일반기준**

기준 및 방법	위반여부 판단
① 급정지·급출발·회전 등 차량의 주행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덮개나 포장을 해야 한다.	덮개·포장 대상임에도 덮개·포장을 하지 않은 차량
② 급정지, 급출발, 회전 등 차량의 주행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, 체인사슬, 벨트, 로프 등으로 충분히 고정하거나 단단히 묶어야 한다.	고임목·체인사슬·벨트 등을 사용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 * 고정상태가 단단한지 느슨한지를 손으로 확인
③ 원형단면 화물 및 개방형 적재함의 전후좌우에 공간이 발생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적재된 화물의 지름 10분의 1 이상의 고임목이나 받침목을 사용해야 한다.	고임목·받침목이 없거나 지름 10분의1 미만을 사용한 경우
④ 적재화물이 주행 중 어느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거나 무게가 집중되지 않도록 적재하되, 무게 중심이 적재부 중심에 가깝게 적재해야 한다.	적재부 무게 중심에 적재하지 않은 경우

□ **개별기준**

화물종류	기준 및 방법
건설기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타이어식 굴착기·로더·지게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0mm이상의 와이어 로프 또는 레버블록을 사용하여 적재부 4개의 점과 기계 4개의 점을 연결하여 단단히 고정</li> <li>- 굴착기는 주차브레이크 사용</li> </ul> </li> <li>○ 이외 기계는 '일반기준'에 따라 필요한 조치</li> </ul>
자동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충분한 성능을 갖춘 고정도구 사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인정) 쇠막대형 고임목*, 고정끈, 고정흙</li> <li>* 적재부에 탈부착하는 것으로서 바퀴 지름의 10분의 1 이상</li> </ul> </li> <li>○ 고정도구로 자동차별로 3개 이상 바퀴 고정</li> <li>○ 상하 2단에 각각 3대 이상을 적재한 경우, 상단 맨앞·맨뒤와 하단 맨뒤는 2개 이상을 '고정끈'으로 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상단 맨앞은 자동차가 운전자석(캐빈) 바로 위에 있는 경우만 적용</li> </ul> </li> </ul>

화물종류	기준 및 방법
<b>코일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원칙) ①운송전용 트레일러 또는 ②탈부착 가능 전용틀 또는 ③일반 적재부인 경우 제시한 기준 및 방법으로 적재·고정</li> <li>○ 일반 적재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적재부 바닥면에 받침목(120mm이상), 받침목 지지용 철재틀을 이용하여 구성한 '적재구조틀'을 설치</li> <li>- 적재구조틀 위에 코일 1개를 올려놓고, 체인사슬(10mm 이상)과 레버(2.5톤 이상 장력)가 결합된 레버블록으로 단단히 고정</li> <li>- 7톤 이상 코일은 레버블록 2개 사용(고정점 4개)</li> <li>- 7톤 이하 코일은 레버블록 1개 사용(고정점 2개)</li> <li>- 7톤 이하 코일을 3개 이상 잇달아 일렬로 적재한 경우, 적재부 맨앞과 맨뒤 코일은 레버블록 2개 사용(고정점 4개)</li> </ul> </li> </ul>
<b>식재용 나무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길이 7미터 이상 적용 (7미터 이하는 일반기준 적용)</li> <li>○ 2곳 이상 부분을 슬링벨트 또는 고무밧줄로 묶어 고정</li> </ul>
<b>대형 평면화물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유리판(가로 3,048mm × 세로 1829mm 이상), 콘크리트 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유리판 기준 미만은 '일반기준'에 따라 고정</li> </ul> </li> <li>○ 유리판은 고정틀(A형, L형)을 반드시 사용</li> <li>○ 적재 후 2개 이상 부분을 고정끈(벨트·로프 등)으로 고정</li> <li>○ 2개 화물을 적재부 앞과 뒤에 일렬·별개로 적재하는 경우, 중앙에 받침대를 놓고, 앞·뒤 화물과 받침대를 밀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중앙받침대 기준 및 재질 등은 미제시(사업자 재량)</li> </ul> </li> </ul>
<b>콘크리트 말뚝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개의 레버블록으로 2곳 이상을 단단히 고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슬링벨트 금지, 반드시 레버블록 사용할 것</li> </ul> </li> <li>○ 직경 60cm 이상의 동일 제품을 2단으로 적재하는 경우, 다른 크기 제품 추가 적재 금지</li> </ul>
<b>강관·철제빔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개의 레버블록 또는 슬링벨트로 2곳 이상을 단단히 고정</li> <li>○ 강관의 선의 지름이나 철제빔의 폭이 70cm 이상인 동일 제품을 2단으로 적재한 경우, 다른 크기의 제품 추가 적재 금지</li> </ul>
<b>컨테이너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적재부 각 모서리에 있는 잠금장치 4개 모두 잠금</li> </ul>
<b>그 외</b> (생김새·모양 유사화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위의 화물종류 생김새와 모양이 비슷한 화물로서 덮개·포장이 곤란한 화물도 위의 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조치</li> </ul>